

2025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5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 “4.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월)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 (신고서류) 2025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앞면에 표기된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